

언어재활사 자격증 [] 발급
[] 재발급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발급 14일, 재발급 5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

신청인	성명	(한글) (한자)	사진 3.5cm×4.5cm
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(전화번호:)	

※ 해당사항만 기재합니다.

발급	응시번호	※ 합격증번호	합격연도	
	출신학교		졸업일자	
재발급	신청급수	[] 1급 [] 2급	자격증 번호	교부 연월일
	신청사유			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언어재활사 자격증의 발급(재발급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

귀하

첨부 서류	발급	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.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: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각 1부 나.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1)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·대학·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성적증명서(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 2)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·대학·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언어재활관찰·언어진단실습·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(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 3) 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같은 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출합니다) 1부 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·대학·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3. 정신질환자,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.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(3.5cm×4.5cm) 2장 ※법률 제1101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.	수수료	
			발급	재발급
	재발급	1. 언어재활사 자격증(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) 1부 2.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(3.5cm×4.5cm) 2장 3.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	없음	수입인지 2,000원

※ 표는 본인이 적지 아니합니다.

----- 절 ----- 취 ----- 선 -----

자격증 [] 발급 [] 재발급 신청서 접수증			
접수번호		자격증별	
성명		생년월일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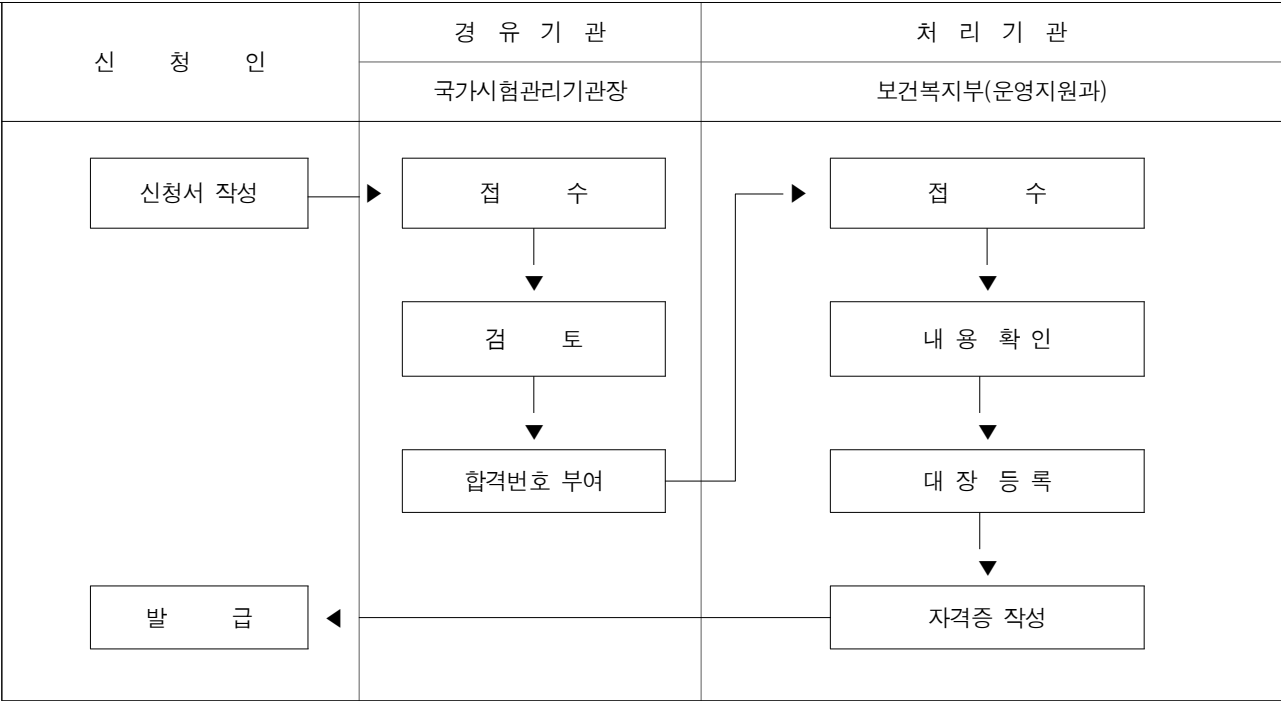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

직인

처리절차[발급]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처리절차[재발급]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